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신청서 내용이 다를 경우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청서와 접수증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처	접수담당자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재산조회 대상자 (사망자·피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신청구분			
☐ 상속인 ☐ 성년후견인 ☐ 한정후견인 ☐ 상속재산관리인			
안내문			

- 처리기간은 금융거래·국세·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유무 조회의 경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지방세·토지 관련 조회의 경우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자동차·어선·건축물 조회의 경우 접수당일입니다.
- 상속인(후견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조회결과는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단, 연금 관련 정보는 상속인(후견인)에게만 통지]
- 국세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필요)
-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가입유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내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4대사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상속인(후견인)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및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여부 조회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신협중앙회	www.cu.co.kr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산림조합중앙회	banking.nfcf.or.kr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우체국	www.epostbank.go.kr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대부업협회	www.clfa.or.kr

-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으면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후견인)**에 한해 접수증(신분증 지참 필수)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등) **상품**은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하거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며, 신청서상의 사망자(피후견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3개 정보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등) 상품 가입 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직접대출),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 상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인(본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동장